

섬유·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에 관한 내규

제정 : 2019. 09. 27.

제 1 조(목적)

본 내규는 「학칙」 제52조 및 「졸업논문 시행 규정」에 따른 섬유·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졸업요건)

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7학년도 입학 학년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토의 500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과전체 회의를 통해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3 조(졸업 작품의 제안, 제작 및 전시)

- ① 학과 학생들은 졸업직전학기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“졸업논문(졸업시험, 졸업연주, 졸업 작품)계획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졸업 작품은 총 4점으로 졸업 작품 수행을 위한 해당 전공교과 과정에서 1점씩 제작하며 세트개념의 작품은 1점으로 인정한다.
- ③ 졸업 작품은 지도교수가 작품의 수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졸업 작품 진행하는 학생과 협의하여 지도한다.
- ④ 학과 학생들은 진행하고 있는 졸업 작품에 대하여 지도교수에게 중간발표를 실시하여 중간점검 및 평가를 받는다. 또한 졸업전시회에 출품할 졸업 작품은 반드시 지도교수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작된 졸업 작품은 학과 졸업전시회에 출품하고 졸업 작품집에 4점 모두 수록하여야 하며, 졸업 작품 발표회를 통해 발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4 조(졸업작품의 심사)

- ① 지도교수와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졸업전시회 오픈 이전에 출품된 졸업 작품을 심사하여, 질적 수준 및 완성도와 다양한 제한요소 반영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① 본 규정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졸업작품 수행을 위한 전공교과

구 분	과목명	내 용
졸업작품 수행을 위한 전공교과	산업직물디자인1	필수졸업작품(산업직물) 진행
	직조디자인3	필수졸업작품(직조) 진행
	문화상품디자인1	필수졸업작품(제품) 진행
	패턴메이킹2	필수졸업작품(의상) 진행
	졸업작품	필수졸업작품 진행